

제16장 환경

제16.1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경제 성장, 사회적 복지, 그리고 건강한 환경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상호 보완적임을 인정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증진하는 것
- 나.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와 천연자원 및 사회기반시설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건전한 환경 정책을 장려하고 증진하는 것
- 다.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에너지 관련 기술을 포함하여, 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무역과 투자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의 형성을 장려하는 것
- 라. 기후변화를 포함한 무역 관련 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양 당사국의 역량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 마. 정책 및 관행, 과학 지식, 그리고 기술 개발을 포함하는, 각 당사국의 환경시스템에 대하여 보다 나은 이해를 달성하고 양 당사국의 확대된 관계를 강화하는 것

제16.2조 일반원칙

1. 각 당사국은 자국법 및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규정하고 장려하도록 보장하고, 천연 및 사회기반시설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자국의 정책 및 국가적 우선 순위를 수립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자국의 환경 법, 규정, 정책 및 관행을 채택, 수정, 운영 및 집행하는 주권적 권리를 존중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 법, 규정, 정책 및 관행이 자국이 당사자인 다른 국가 간 환경협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을 포함한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적 약속과 합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보장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 법, 규정, 정책 및 관행이 보호무역주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한다.

5.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자국의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여서는 아니된다.

6.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자국의 법 또는 규정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면제하겠다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함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에 부여된 환경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켜서는 아니된다.

7. 각 당사국은 국내적으로 자국의 환경 법, 규정,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하고, 자국의 환경법 및 규정의 운영 및 집행을 위한 절차 및 제도가 공정하고 공평하고 투명할 것을 보장한다.

제16.3조 다자간 환경 협정

1. 양 당사국은 기후변화를 포함한 세계적 또는 지역적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으로서 국제 환경 거버넌스와 협정이 갖는 가치 및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다자간 환경협정과 국제무역규칙 간의 상호지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무역 또는 투자에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자간 환경 협정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이라도 사안의 해결을 위하여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다.

제16.4조 환경친화적 무역

1. 양 당사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로서 양국 경제에 있어서 환경에 유익한 환경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무역 및 투자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환경기술,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환경에 유익한 환경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고 증진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제16.5조 투명성

제 17.4조(행정절차)에 더하여, 양 당사국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공지와 공공 협의, 그리고 민간부문을 포함한 비국가 행위자와의 적절하고 시의적절한 의사소통과 협의를 통해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주는 환경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개발, 도입 및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16.6조 환경영향 검토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이 협정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다루는 데에 대한 자국의 경험에 관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과 공유한다.

제16.7조 제도적 장치

접촉선

1.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제16.8조에 따른 환경협력 활동의 조정을 포함한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 환경 관련 사안을 담당하는 자국 부처 내의 사무소를 다른 쪽 당사국과의 접촉선으로 지정한다.

환경위원회

2. 양 당사국은 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환경 관련 사안을 담당하는 부처와 그 밖의 적절한 기관 또는 부처의 고위 공무원 또는 그 지명자로 구성된다.

3. 위원회는

가. 협력 활동의 합의된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나. 협력 활동을 감독하고 평가한다.

다. 상호 관심 있는 환경 사안에 대한 대화의 장 역할을 한다.

라. 이 장의 운영 및 결과를 검토한다. 그리고

마. 위원회가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그 밖의 어떠한 조치도 한다.

4.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양 당사국이 상호 결정하는 대로 회합¹한다.

5. 3년 후 또는 달리 합의한 대로, 위원회는 이 장의 운영 및 결과를 검토하고, 공동위원회에 검토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대중에 공개될 수 있다.

이해당사자 협의

6. 위원회는 이 장의 이행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관련 이해당사자 또는 전문가와 협의하거나 그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

7.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운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 이해당사자에게 견해 또는 조언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고, 자국의 법, 규정, 정책 및 관행에 따라서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을 자국 대중에 알리는 메커니즘을 개발할 수 있다.

8. 위원회는 각 위원회 회합의 종료시 그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한다. 위원회의 보고서는 대중에 공개될 수 있다.

제16.8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고 이 장의 목적 달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무역 관련 환경 사안에 대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양국의 국가적 우선 순위와 이용 가능한 자원을 고려하면서, 양 당사국은, 관련된 경우, 정부와 비정부단체(상업, 산업, 교육 및 연구 기관을 포함한다)의 상호작용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환경 사안에 대한 양자, 지역 및 다자 포럼에서 양국의 협력관계를 확대하기로 약속한다.

3. 양 당사국은 또한 부속서 16-가에 규정된 상호 합의된 환경 문제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제16.9조 협의

¹ 위원회는 원격회의, 화상회의, 또는 양 당사국이 상호 결정하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회합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직접 대면으로 회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회합 장소는 양 당사국에서 교대로 한다.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항상 노력하고, 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화, 협의 및 협력을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양 당사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어떠한 인 또는 기관으로부터도 자문 또는 지원을 구할 수 있다.
2. 한쪽 당사국은 접촉선을 통하여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서도 다른 쪽 당사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제출된 협의 요청의 접수를 한쪽 당사국이 인지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개시된다.
3. 상호 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국은 18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른 협의 기간을 결정한다.
4. 협의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접촉선을 통하여 위원회가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요청 후 90일 이내에 회합한다. 접촉선은 위원회의 회합 전에 그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락을 취한다.
5. 심의를 돋기 위하여 위원회는 독립적인 한 명 이상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문제의 해결에 대한 결론 및 권고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결론 및 권고를 포함한 위원회 보고서는 대중에 공개될 수 있다.
7. 양 당사국은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위원회의 결론 및 권고를 이행한다.
8. 제4항에 따른 위원회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요청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에 그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9.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16-가 협력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목적 달성을 증진하고, 그에 따른 양국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잠재적 협력 분야에 관한 예시적 목록을 수립하였으며, 이 목록은 양자, 지역 또는 다자적 수준에서 추구될 수 있다.

- 가. 특히,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연합환경계획 및 다자간 환경 협정을 포함하여,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환경적 측면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 포럼에서의 협력
- 나. 다자간 환경 협정과 국제 무역 규칙 간의 관계에 대한 견해 교환을 포함하여, 다자간 환경 협정의 무역 관련 측면에서의 협력
- 다. 환경 규정, 규범 및 기준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및 관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교환
- 라. 세계 탄소시장과 관련된 문제 및 무역이 기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루는 방안을 포함하여, 현재와 미래의 국제기후변화체제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
- 마. 무역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 개발
- 바. 환경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대중 인식과 교육 프로그램의 증진, 그리고
- 사.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상호 관심이 있는 환경에 관련된 그 밖의 영역

2. 무역과 관련된 환경 및 에너지 사안에 대한 양국 공통의 관심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사안에 대하여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

- 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에너지 관련 기술의 보급
- 나.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정책, 법, 규정 및 그 밖의 조치

다. 특히, 국제 에너지 기구,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및 다자간 환경 협정을 포함하여,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에너지 측면을 담당하는 국제 포럼에서의 협력, 그리고

라. 자국 영역에서의 에너지 활동이 환경적 우려에 민감한 방식으로 수행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이 제안하는 모든 조치

3. 양 당사국은 협력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수단을, 적절한 경우, 장려하고 활성화한다.

가. 상호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한 공동 연구

나. 환경 전문가 및 관리 인력의 교류

다. 기술적 정보 및 출판물의 교환

라. 워크샵 및 우수 관행의 교환, 그리고

마. 양 당사국이 결정한 협력의 그 밖의 모든 유형

4. 협력 활동의 확인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이 협정 발효 이후 첫 번째 절차로서 양국의 최초 우선 순위 목록을 교환한다.

5.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협력을 위한 잠재적 영역의 확인과 상호 결정한 협력 활동의 수행에 있어서 자국의 비정부 분야 및 그 밖의 단체를 참여시킬 수 있다.